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05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천연가스 수입 대상물량 규정을 위반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수입 제한	3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근거 마련 ...	7
※ 참고자료	13
1. 천연가스 자가소비용직수입자 현황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정호의원 등 15인
2. 제안연월일 : 2024. 11. 13.
3. 회부연월일 : 2024. 1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에게 말함)가 설비의 신설·증설 등으로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와 가스 도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와 체결한 가스 공급에 관한 계약이 해지·만료되거나 그 계약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만 신고한 물량 외에 추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외에는 천연가스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천연가스 도입가격이 상승하면서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국제 천연가스 시황과 평균요금 수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경우에만 수입 여부와 시기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한국가스공사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의 천연가스를 구입하면서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 직수입과 도시가스 물량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추가 수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가소비용수입자의 천연가스 추가 또는 별도 수입 금지 사항 준수 여부와 조정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정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의 책정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9 및 제40조 등).

Ⅲ. 검토의견

1. 천연가스 수입 대상물량 규정을 위반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수입 제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천연가스 수입 대상물량 규정을 위반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9제4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u>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함¹⁾.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4(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용도) 법 제2조제9호에서 “발전용·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는 산업·전력 생산원가 절감 및 천연가스 대량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1997년 도입되었음. 도입 당시에는 사전승인제로 도입되었으나²⁾, 2001년 사후신고제로 전환되었음³⁾.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천연가스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⁴⁾. 이 중 자가소비용 직수입 물량의 비중을 보면, 2015년 기준 국가 전체 도입물량의 5.7%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 22.1%를 차지하였으며, 2024년에는 25.7%까지 확대되었음. 2025년 2월 기준 25개 업체가 천연가스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 등록되어 있음⁵⁾.

[천연가스 자가소비용 직수입 현황]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직수입 물량(만톤)	188	216	465	614	728	906	860	738	933	1,211
비중(%)	5.7	6.3	12.3	13.9	17.8	22.1	18.4	15.7	20.8	25.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
2. 산업용: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
3.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4. 열 전용(專用)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
- 2) 1995. 12. 29.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단, 1997. 1. 1.부터 시행).
- 3) 1998. 9. 23. 「석유사업법」 개정 시 천연가스 수출입계약의 사전승인제를 사후신고제로 변경하였음(단, 2001. 1. 1.부터 시행). 2004. 10. 22. 「석유사업법」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부개정되었고, 2007. 12. 2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천연가스 수출입 관련 조항이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이관되었으며, 2005년 포스코와 SK E&S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음.
- 4) 2020년 기준 99.6%, 출처: 우리나라 가스산업 개요, KESIS(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kesis.net/sub/sub_0001_01.jsp
- 5) 천연가스 자가소비용직수입자 현황은 참고자료 1 참조

현행법 제10조의9⁶⁾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설비의 신설·증설이나 연료의 대체 등에 따라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천연가스 수입을 금지(제3항)하는 등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입 대상물량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국제 천연가스 시황과 국내 평균요금 수준을 비교하여 천연가스 수입 여부와 시기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한 경우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예정했던 직수입을 하지 않고 한국가스공사에 공급을 요청하게 되면 한국가스공사가 스팟구매⁷⁾ 등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소비자 요금 인상 및 국가적인 천연가스 수급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가소비용직

6)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연료의 대체 등에 따라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와 체결한 가스 공급에 관한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거나 그 계약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발전용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발전용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천연가스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한국가스공사는 중장기계약 위주로 소요물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요 예측 대비 증가한 소요 물량에 대해서는 단기 및 스팟계약으로 확보하고 있음.

수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천연가스의 수입 대상물량규정을 위반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선택적 천연가스 구매 행위로 인한 국내 천연가스 시장의 교란 방지 및 소비자 요금 인상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0조의9제4항은 천연가스 수입 대상물량 규정을 위반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수입제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천연가스의 수입제한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고, 수입제한 기간은 재산권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수입제한 기간의 범위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의 수입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량을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공급받게 되어 한국가스공사의 현물 구매량이 증가하는 등 입법취지와 상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과도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근거 마련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입 대상물량 규정 준수 여부 및 조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9제5항·제6항, 제40조제2항·제3항 및 제54조제3항제1호의3·제6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자가소비용수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u>
<u><신설></u>	<u>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대장,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40조(조정명령 등) ① (생략) <u><신 설></u> <u><신 설></u> ② ~ ④ (생략) 제54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의2. (생략) <u><신 설></u>	⑥ 제5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0조(조정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필요한 조정을 명령하거나 명령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대장,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5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10조의9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현행	개정안
2. ~ 5. (생략) <u><신설></u>	<u>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기피한 자</u> 2. ~ 5. (현행과 같음) 6.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 <u>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u> <u>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u> <u>한 자</u>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0조의9⁸⁾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입 대상물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40조제1항 및 현행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

8)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연료의 대체 등에 따라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와 체결한 가스 공급에 관한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거나 그 계약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발전용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발전용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천연가스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도시가스사업법」

제40조(조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0조(조정명령)

① ~ ②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1.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2.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
3. 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등의 조정
4.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교환에 관한 조정

하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천연가스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등에 대한 조정(調整)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⁰⁾.

개정안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입 대상물량 준수 여부 및 조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가소비용직수입 대상물량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국가 천연가스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0조의9제5항 및 제40조제2항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4조제3항제1호의3 및 같은 항 제6호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체계자구의 통일성을 위하여 안 제54조제3항제1호의3 및 같은 항 제6호의 ‘자료’를 ‘자료나 물건’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0조의9제5항 및 제40조제2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에 관한 조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조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생략)

10)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조정명령 발동사례는 없음.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대장,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0조의9제6항 및 제40조제3항은 제10조의9제5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권한 표시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하고 있으므로, ‘검사’를 ‘조사’로 자구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민간LNG산업협회는 개정안에서 제10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위반에 대한 천연가스 수입 제한과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0조의9제1항과 제2항의 규정¹¹⁾ 준수 여부 확인은 천연가스 수출입계약의 사전통보 및 사후신고 시에 확인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은 과도한 행정조치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참고로, 현행법 제10조의5제3항 및 제4항¹²⁾에 따르면 자가소비용직

11)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연료의 대체 등에 따라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와 체결한 가스 공급에 관한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거나 그 계약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발전용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발전용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2)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계약

수입자는 천연가스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문 의 처
02)6788-5464

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1. 천연가스 자가소비용직수입자 현황('25.2월 기준)

연번	사업자	등록일	용도
1	포 스 코	'05.05.10	산업용(포항·광양제철소)
2	SK E&S	'05.08.12	발전용(광양복합화력)
3	GS칼텍스	'09.06.25	산업용(GS여수공장)
4	중부발전	'14.11.25	발전용(세종열병합, 서울복합)
5	GS EPS	'16.10.28	발전용(당진복합화력)
6	나래ES	'16.11.23	발전용(위례열병합)
7	파주ES	'16.11.23	발전용(장문복합화력)
8	GS파워	'18.01.16	발전용(안양열병합)
9	S-Oil	'18.03.09	산업용(S-OIL 온산공장)
10	포스코인터내셔널	'18.11.14	발전용(인천포스코복합화력)
11	신평택발전	'19.04.25	발전용(신평택복합화력)
12	SK에너지	'20.03.12	산업용(울산공장)
13	고려아연	'20.10.06	산업용(울산공장)
14	한화솔루션	'21.05.14	산업용(여수공장)
15	현대케미칼	'21.11.04	산업용(대산공장)
16	SK하이닉스	'22.05.16	산업용(이천공장)
17	여주ES	'22.10.27	발전용(여주복합화력)
18	서부발전	'22.12.22	발전용(김포열병합)
19	롯데이네오스화학	'23.09.04	산업용(울산공장)
20	남부발전	'23.09.08	발전용(신세종복합)
21	SK 인천석유화학	'23.10.30	산업용(인천공장)
22	통영에코파워	'23.10.31	발전용(통영발전소)
23	울산 GPS	'24.03.04	발전용(울산지피에스발전소)
24	SK 멀티유틸리티	'24.03.04	열병합용·영전용설비용 (울산발전소)
25	동서발전	'24.11.27	발전용(음성·울산복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